

「2024년도 구로구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개선사업」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4.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불법·노후 간판이 무질서하게 난립된 지역을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제한·완화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구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고시하는 구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정비시범구역은 다음과 같다.



제4조(예산의 지원) 본 고시로 지정된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에서 고시한 기준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 등의 제작비용과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광고물 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1. 한 업소에서 표시·설치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1개(벽면이용간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판의 총 수량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나목과 라목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 가. 도로의 굵은 지점에 접한 업소,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벽면 이용간판 1개를 추가로 표시·설치할 수 있다.(이 경우 추가되는 간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자부담 원칙)
 - 나. 하나의 업소당 표시면적이 0.36㎡ 이하인 연립형간판(2개 이상의 업소를 하나의 간판에 표시하는 것)은 건물당 1개를 추가로 표시·설치할 수 있다.
 - 다. 4층 이상 건물의 가장 높은 층에 당해 건물명을 표시하는 간판은 추가로 표시·설치할 수 있다.
 - 라. 1면의 면적이 0.36㎡ 이내인 소형돌출간판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이는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 “약” 등) 및 이·미용업소 표지등을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형태·재질·색상은 업소의 특성에 맞게 사용하되, 주변 환경 및 건축물과 조화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3. 고채도의 원색을 주조색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에 포인트 색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형광 도료 또는 야광 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 포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여야 하며, 빛의 점멸 또는 화면이 변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없다.

② 벽면이용간판의 표시방법

1. 건물의 5층까지 입체형 간판으로 표시·설치하되, 1층의 경우 건물 노후화 등으로 미관을 저해할 경우 판류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간판의 가로크기는 업소폭의 80% 이내(최대 10m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며, 판류형의 세로크기는 80cm 이내, 입체형 표시문자의 세로크기는 45cm 이내로 한다.

③ 기타 표시방법

1. 소형돌출간판을 제외한 돌출간판의 표시·설치를 금지하며, 소형돌출간판은 1면의 면적이 0.36㎡ 이내, 두께 20cm 이내로 표시·설치한다. 한 건물에 2개 이상의 소형돌출간판을 표시·설치할 경우 건물 측면에 상·하로 일직 선상에 위치하도록 설치하고, 동일한 규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구로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2. 지주이용간판은 원칙적으로 표시·설치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구로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일한 장소 또는 건물의 부지에 2개 이상의 업소를 표시하는 연립형 지주이용간판은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규격은 높이 4m 이내, 1면의 면적 3㎡ 이내로 하며, 보행인 또는 차량 등의 시야 확보 및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3. 창문이용광고물은 건물 3층 이하의 유리벽 안쪽, 창문, 출입문에 천, 종이, 비닐 등을 이용하여 가로 또는 세로의 한 폭이 30cm 이내의 띠 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적용의 특례) 건물의 특성, 지역 여건상 이 고시의 표시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하고, 도시 미관과 생활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이 고시 기준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주변여건과 맞지 않거나 도시 미관을 상당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로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제한·완화하여 표시·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기타사항)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옥외광고물 등 관련 법률, 시행령, 서울시 조례, 구로구 조례, 구로구 심의기준 등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일 이전에 옥외광고물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거 적법하게 허가·신고하여 표시·설치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해당 광고물등의 표시 기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광고물 등의 변경 또는 기간연장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